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9. 30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99호로 2024년 9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정비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및 수수료 정비(안 별표)

나.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 변경(안 제5조)

다. 상위법과 일치 및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, 안 제3조제1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,

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8. 1.~8. 22. / 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참고하여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### 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의미가 모호한 “진료수가”를 삭제함.
- 안 별표에서는 관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및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함.

### ○ 검토 결과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(區)는 본 조례를 제정('88.5.1. 제정)하여 시행 중임.

- 이번 일부개정은 관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및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(수수료)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'24.11.23. 시행될 예정이며, 우리 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<sup>1)</sup>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 또한, 현행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3,000원으로 이번 일부개정 이후에 금액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에 상위법 시행 전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- 아울러,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제6조(건강진단의 실시)<sup>2)</sup>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되어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---

1)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관련 사항을 개정한 곳은 동대문구 1곳이나, 시행일이 상위법령 시행일(2024년 11월 23일)과 같음.

2) 제6조(건강진단의 실시)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와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24. 6. 18.>

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. <신설 2024. 6. 18.>

# 참 고 자 료

## 1 지역보건법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

제6조(건강진단의 실시)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와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또는 의원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.

## 3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시행일: 2024. 11. 23.]